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직업안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대상을 직업훈련기관까지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 직업정보제공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부합하도록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의3)

직업훈련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구직자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의 공동(또는 위탁) 사업 수행 가능 기관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을 추가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개선(안 제21조, 안 제34조의2)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공무원 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경력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합리화함.

- 법인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현행 ‘임원 2명 이상’이 관련 자격을 갖출 것에서 ‘1명 이상’으로 변경

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예치금 금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

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제28조)

온라인 직업정보제공사업 확대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취업추천”등 표현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선

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일정기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 위반 차수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직업
능력개발훈련법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을 “1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으로,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를
“1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나.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제21조제1항제2호 중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가.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라.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업무 전담자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3.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그 목적 등을 밝히고 구직자의 동의를 받고, 구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

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 사업소별로 1천만원. 다만,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5천만원
2.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1억원.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3.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 2억원

별표 제1호가목 후단 중 “경우”를 “경우 기간의 계산은”으로, “부과처분을 한 날과”를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
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또는 -----
----- 1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나.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에서 -----

-----사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
을 가진 자.

가.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
교

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상담
· 직업지도 ·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
무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
른 사회복지사

다.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
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라.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
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u>노무관리업무전담자</u>
4. <u>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 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 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u>	<u><삭 제></u>
5. <u>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 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 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u>	<u><삭 제></u>
6. <u>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u>	<u><삭 제></u>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u>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 상인 자</u>	<u><삭 제></u>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u>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 람</u>	<u><삭 제></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 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 수사항) ----- ----- -----.

1. · 2. (생략) 3. <u>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 · “취업추천” · “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u> 4. <u>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u> 5. · 6. (생략)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 ① <u>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u>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3. <u>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그 목적 등을 밝힌 후 구직자의 동의를 받고, 구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u> <u><삭제></u> 4. · 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 ① ----- ----- <u>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u> ----- ----- ----- <u>가입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u> 1. <u>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 사</u>
--	---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신 설>

업소별로 1천만원. 다만,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5천만원

2.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1억원.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3.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 2억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나. 제2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 (생략)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부 칙

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393